

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-제45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6. 7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령제명 낫표 표시 및 용어의 명확한 표기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

○ 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

⇒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나. 법령제명 낫표표시 및 개정된 법령 조항 수정(안 제1조)

○ 청소년기본법 제13조 ⇒ 「 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07. 5. 1 ~ 5. 21)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조중 “청소년기본법 제13조” 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” 로 하고,
“사천시청소년위원회” 를 “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” 로 한다.

제2조중 “시장” 을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한다)” 으로 하고, “교육장”
을 “사천교육청교육장” 으로 하며, “경찰서장” 을 “사천경찰서장” 으로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: 사천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	제명 : 사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청소년기본법</u> <u>제13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하여 <u>사천시 청소년</u> <u>위원회</u> 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「 <u>청소년기본법</u> 」 <u>제11조</u> ----- ----- <u>사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
제2조(구성) ①(생 략)	제2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
②위원장은 <u>시장</u> 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----- <u>사천시 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 이라한다) -----
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<u>교육장</u> , <u>경찰서장</u> 이 되며,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,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----- ----- <u>사천교육청 교육장</u> , <u>사천경찰서장</u> ----- ----- -----

관계법령 발췌

【청소년기본법】

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
②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.

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